



## 수출입통관 업무에 대한 투명한 컨설팅

성실성과 노련함으로 인정받고 있는 직원들이 힘을 합하여  
경륜, 패기, 서비스정신으로 무장

# 수입식품 현품 확인하기 !

# 수입식품 현품확인 하기

## ▣ 준비물 :

1. 영문성분분석표(Ingredients-성분 및 배합비율 100%)
2. 제조공정도(Flow Chart),
3. **현품 이미지. [현품이미지를 확인하는 이유]**
  - ① 현품에 인쇄된 성분과 성분표(서류)상의 내용이 동일한지를 확인
  - ② 현품에 인쇄된 제한적인 표현이 있는지 확인
  - ③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 위치 및 읽는 방법 확인
  - ④ 현품의 주요부분이 가려지지 않는 범위에서 한글스티커 사이즈 결정

※ 성분(원료) 사용가능여부 , 첨가물의 사용가능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 수입자준비물 :

1. 사업자등록증
2. 영업등록증 (식품등의수입판매업)
3.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주소
4.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5. 원산지증명서(각국별, 한-OOFTA 원산지증명서)

# 수입식품 현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 ▣ 오늘은 수입식품을 수입하시려고 하는 영업자가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와 함께 중요하게 확인 하셔야 하는 현품확인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검토를 하시는 제품은 수출국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는 식품 입니다. 수출국(제조국) 자국에서 유통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성분이나 인쇄내용이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국 기준에 따라 표시사항을 검토 하게 되는 데요, 국가 간에 식품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 주의사항 :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 표시 제품**의 수입가능여부

간혹 현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 표시 제품이 수입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식약처에서는 **무 표시 수입식품은 수입통관이** 불허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수출국 자국에서도 유통될 수 없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생산 된 식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식품이 생산되었다면 부정불량 식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수입통관을 불허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생산국에서 유통되면서 자국민들이 먹고 마시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 하셔야 하며 대한민국에 유통하기 위해서 수입 하시는 경우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세심하게 표시사항 검토와 인쇄된 내용을 살펴 보셔야만 할 것 입니다.

# Manufacturer 제조사 확인하기

## ▣ 현품에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상호 및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 합니다.

**구글지도[위성사진] 활용**하셔서 제조사가 실제로 공장지역인지를 확인 합니다. (예 : 도시중심 및 변화가인 경우에는 **생산시설 공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수출국 제조사가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사를 제조사로 등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제조시설이 변화가에 위치 할 수 있을 확율이 낮음

위 사진과 같이 변화가에 식품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식품을 생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검색하셔서 변화가에 공장이 위치 하였다면 실제로 제조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제조시설이 포함된 공장지역

식품제조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공장을 확인 하셔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 Manufacturer 제조사 확인하기

## ▣ 현품에 제조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상호 및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 합니다.

구글지도를 활용하셔서 제조사가 실제로 공장지역인지를 확인 합니다. (예 : 도시중심 및 번화가인 경우에는 **생산시설 공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본사를 제조사로 등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현품에 제조사 표시 또는 인쇄가 없는 경우

현품에 제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써 제조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자등록증 처럼 외국에서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 을 요청하고 생산자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Handler or Distributor**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제조업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실사과에서는 제조사를 실사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위 안내 드렸던 사항으로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취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현품에 제3국 언어가 표시된 경우 **부적합** 처리됨.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양국간 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위생조건을 준수하여 물품을 생산하고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제3국 언어가 표시되었다는 내용은 결국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한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수입 전 제3국어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Manufacturer 제조사 확인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하기

▣ 제조사를 확인 하셨다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누군가가 수입을 진행하고 계신 품목이라면 해외제조업소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화주께서 처음으로 해외수출자[제조사]와 Contact 하셔서 수입을 진행 하신다면 번거롭겠지만 다음절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간 : 7일

▣ 해외작업장 등록기간 : 6개월 이상

주의사항 : 해외작업장등록의 경우에는 수입화주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에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상당히 긴 시간  
이 소요되기 때문에 축산물 원료육 및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실 경우에는 해외작업장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사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또는 식품유형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식품판단 하셔서 가공식품의 식품유형을 생각하시고 업무를 진행 진행  
하시다가 식품유형이 축산물 가공품으로 바뀌게 되면 식품유형도 축산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  
외작업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해외작업장 및 가공품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수입통관이 지연 되거  
나 수입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절차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 [축산물위생설문서 송부] ->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 -> [한국 식약처 답변서 검토]  
-> [현지실사] -> [수입허용여부결정] -> [수입우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해외작업장 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www.mfds.go.kr

글로벌 세상

보다나온 식약처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신고 코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Your's Best partner "Bokang"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제조업소를 식약처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자들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쉽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수입식품이 축산물, 수산물 약정국 및 수산부산물일 경우에는 본 매뉴얼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알기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 CONTENTS

### 01 해외제조업소 등록



- 1 해외제조업소란? \_ 06
- 2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_ 06
- 3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_ 07
- 4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_ 08
- 5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_ 14
- 6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주요 사유 \_ 15

### 02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련 질의응답 모음



- 1 해외제조업소 등록 \_ 18
- 1 신규등록 \_ 20
- 2 변경·갱신 등록 \_ 22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Your's Best partner "Bokang"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본가 또는  
해외제조  
업소 등록  
안내

## 01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등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포함)

\* 관련 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본가 또는  
해외제조  
업소 등록  
안내

## 02 해외제조업소 등록이란?



###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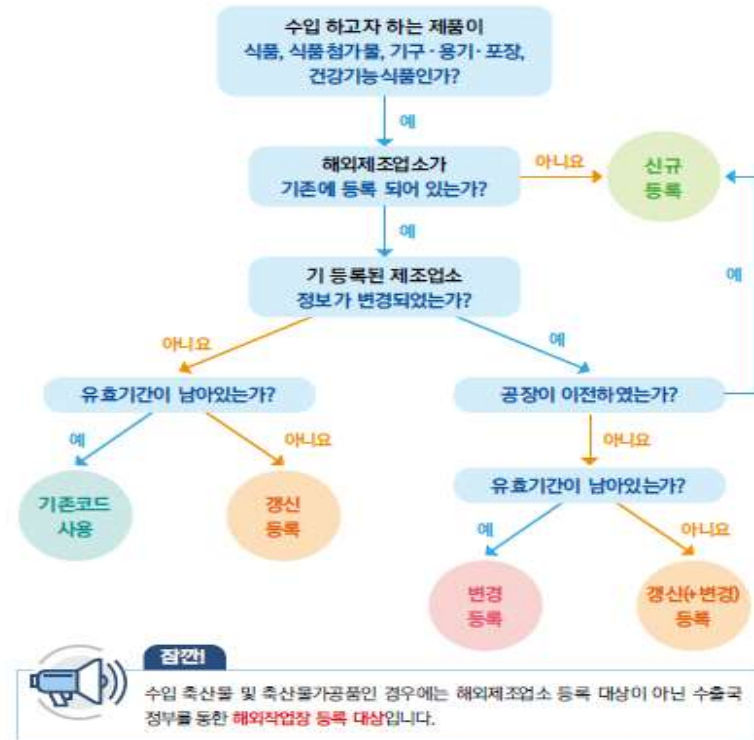
\*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시행규칙 제2조

6

www.mfds.go.kr

본가 또는  
해외제조  
업소 등록  
안내

## 03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7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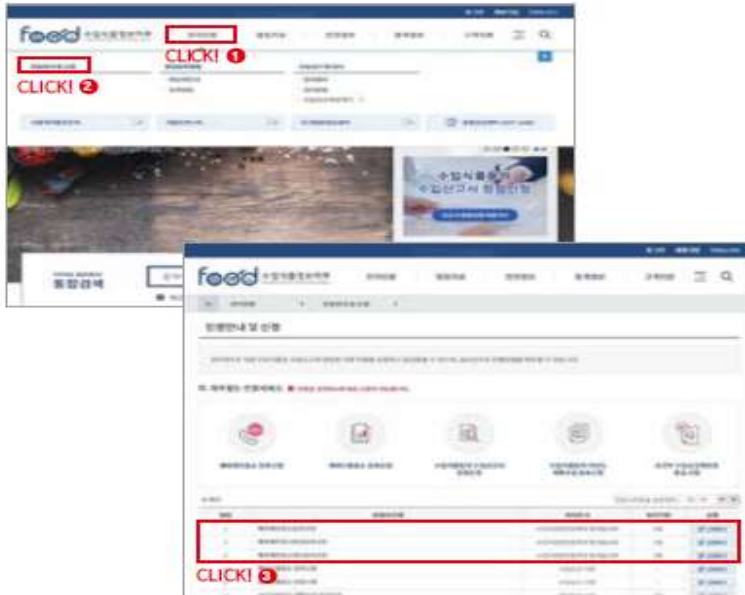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4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 (<https://impfood.mfd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① [전자민원] > ②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등록신청] > ③ [민원신청]



8

Your's Best partner "Bokang"

www.mfds.go.kr

### ① [중복확인] 선택

- 신규등록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명], [소재지], [국가] 입력 후 [검색] > 중복으로 등록된 사항이 없다면, 하단의 돋보기(지역) 클릭 > [검색] 버튼을 눌러 해당되는 지역 선택
- 변경 또는 갱신의 경우 '업소조회'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기존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오니, 변경사항만 지우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 소재지 이전의 경우 신규로 등록하여야 함
-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입력

### ② [식품 정보], [영업 정보] 입력

9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

1 [파일추가]를 눌러 필수 제출서류\* 첨부합니다.  
\*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 서류(영문본)

1. 필수 정보 입력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공장 확인서류  
공통 확인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 증명서 및 보고서 등 (영문본)

2. 첨부파일

공통 기본 제출 서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3. 동의사항 확인 후 4 [신청]

4. 필수 정보 입력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공장 확인서류  
공통 확인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 증명서 및 보고서 등 (영문본)

5. 첨부파일

공통 기본 제출 서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6. 동의사항 확인 후 7 [신청]

7. 필수 정보 입력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공장 확인서류  
공통 확인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 허가 증명서 및 보고서 등 (영문본)

8. 첨부파일

공통 기본 제출 서류가 업로드되었습니다.

9. 동의사항 확인 후 10 [신청]

## 1 신규등록

수입된 이력이 없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을 새롭게 등록

### 주의사항

- 1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과 소재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2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취소됩니다.
-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축산물일 경우, 해외제조업소가 아닌 해외작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5 수산물 약정시설의 경우 해당 국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 1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제조업소 공문(또는 각각의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 서류(영문본))
  - 공문 주요 내용: A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공장에 대한 정보 포함
- 2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제조업소 공문,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의 취하요청서
  - 공문 주요 내용: 이전 전/후의 소재지, 이전 일자, (구)공장의 운영 여부
- 3 유사한 주소지에 여러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 추가 필요 서류: 제조업소 공문(또는 수출국 국가 발행 공장 확인 서류(영문본))
  - 공문 주요 내용: A사와 B사가 별개의 다른 회사를 확인하는 정보 포함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

## 변경등록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 ☑ 주의사항

- 1️⃣ 공장이 이전(위치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이 아닌 신규등록 대상입니다.
- 2️⃣ 하나의 회사가 여러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각각의 공장을 개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3️⃣ 기등록된 해외제조업소가 수출업소(유통회사 포함) 정보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아닌 등록취소 대상입니다(실적 연계 불가함).
- 4️⃣ 수산물 약정시설의 업소명,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국기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 1️⃣ 업소명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업소명 변경(인수합병 등),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회사는 A업소명에서 B업소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가)라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 2️⃣ 소재지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행정체계 변화,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A업소명의 회사 주소가 [변경 사유]에 의해 (가)라는 소재지에서 (나)라는 소재지로 변경되었다.

#### 3️⃣ 대표자 변경

- 변경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조업소 공문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회사는 A 대표자에서 B대표자로 변경되었으며, (가)라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12

www.mfds.go.kr

3

## 갱신등록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되기 전에 갱신필요

### ☑ 주의사항

- 1️⃣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 1️⃣ 업소명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업소명 변경(인수합병 등),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회사는 A업소명에서 B업소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가)라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 2️⃣ 소재지 변경

- 추가 필요 서류 : 제조업소 공문
- 주요 변경 사유 : 행정체계 변화, 오타 수정 등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A업소명의 회사 주소가 [변경 사유]에 의해 (가)라는 소재지에서 (나)라는 소재지로 변경되었다.

#### 3️⃣ 대표자 변경

- 변경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조업소 공문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 공문 주요 내용 : 우리 회사는 A 대표자에서 B대표자로 변경되었으며, (가)라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다.
- \* 참고로, 민원처리 결과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건 / 민원 완료 건 확인 가능합니다.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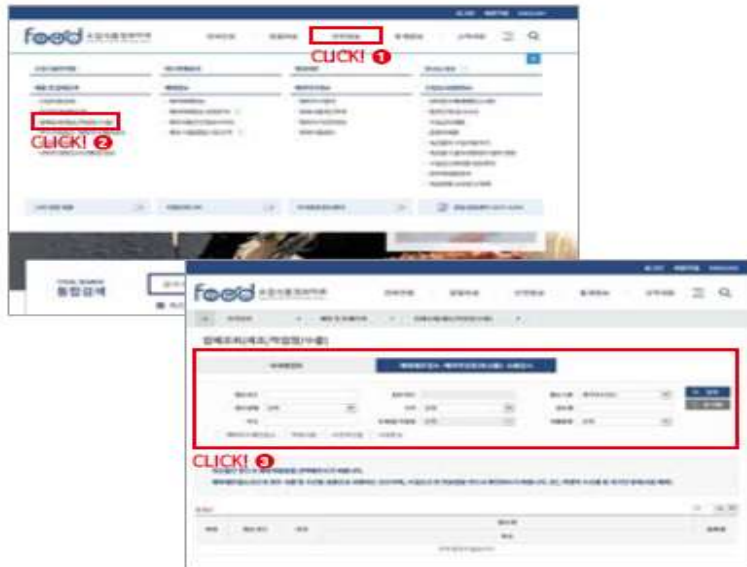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05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조회 방법



-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 (<https://impfood.mfds.go.kr>)
- ① [안전정보] > ② [업체조회]
- ③ [해외제조업소] 탭 > 해외제조업소 코드, 업소명, 소재지로 검색 가능



14

Your's Best partner "Bokang"

www.mfds.go.kr

## 06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 주요 사유



- ❑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제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수산물은 선박을 포함)하는 시설이 아닌 수출회사(유통·무역회사 등 포함)로 확인된 경우
  - 제조업소 폐업 및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 ❑ 해외제조업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설이 아닌 경우 등)

- ❑ 제조업소 심사 결과 확인 사항에 따른 처리
  - 확인사항 :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수출업소, 공장 폐업으로 인한 미운영 등



15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Your's Best partner "Bokang"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정책과

## 01 해외제조업소 등록



###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를 등록해야 하나요?

최종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인 경우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제조공정이 없으므로 최종 제조공정인 포장장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제품의 제조공장이 A제조업소와 B제조업소에서 제조공정을 나눠서 생산할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하나의 제품을 여러 업소에서 제조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하는 대상은 최종 제품의 포장이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젓병 관련 수입하는 경우, 실제 젓병과 젓꼭지 부분을 제조·가공하는 회사가 각각 다를 경우에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A와 B에서 각각 완제품을 만들고 C에서 단순 포장을 진행한다면 A와 B를 각각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고, 각각 완성된 제품을 C에서 최종 조립 및 세트 포장을 진행한다면 C를 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8

www.mfds.go.kr

### 와인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주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최종 병입하는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의 브랜드명(상표명)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병입장소가 매번 바뀌는 경우,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제조업소 측 공문이 첨부되는 조건으로 원액을 제조·생산하는 시설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제조회사 즉 OEM 위탁자가 A이며, 그 위탁을 받아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B일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은 실제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한 업소를 등록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식품 등을 생산할 경우 실제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업소 B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19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www.mfds.go.kr

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중립적 표현  
입니다.

## 02 신규등록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조업소가 수출국 정부로부터 식품 생산 시설임을 증빙 받은 서류(영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시,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HACCP, ISO22000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싶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승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통해서 식품을 수입하더라도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는 누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수입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가능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② 식품제조가공업(주류포함)
- ③ 식품첨가물제조업
- ④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⑤ 건강기능 식품벤처제조업
- ⑥ 용기/포장지제조업

위 업종의 인허가로 로그인 하여야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관세사 및 대행업자 등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이 불가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

### 해외제조업소가 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적인정은 안되나요?

해외제조업소가 이전을 하였을 경우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이전에 대한 증빙서류(제조사 공문, 수출국 정부 발행 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신규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등록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코드가 새롭게 부여된 경우 이전 수입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업체가 수출 후 반송한 제품의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제품도 수입식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수출한 국내제조업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 한 후 수입신고 하면 됩니다.

### 제조업소 갱신 만료일이 지나면 갱신신청인가요? 신규등록 신청인가요?

갱신신청 대상입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내역과 이미 등록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건 / 민원 완료 건 진행상황 에서 조회가능 합니다. 해당 민원신청번호를 누르시면 신청하셨던 상세내역과 등록코드, 반려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심사 동의는 의무사항인가요?

실사 동의는 의무사항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확인·체크하여야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1

# 해외제조업소 등록안내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본가  
제조업소  
등록  
안내

## 03 변경·갱신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수입가능 품목을 가공식품으로 하였고 동일한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업체를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코드가 가공식품으로만 체크되어 있다면, 해당 등록코드에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체크를 하여 변경등록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갱신등록신청을 하려고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 하고 2년이 지나면 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 문자가 발송 된 것입니다. 등록하신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최초등록 수입업체가 아닙니다. 다른 수입업체도 변경/갱신이 가능한가?**

최초 등록된 수입업체가 아니라도 변경등록, 갱신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등록신청을 하려고 제조업소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변경등록신청과 갱신등록신청 두 번을 해야 하나요?**

갱신등록신청을 하시면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대상인 공장 이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사의 업소명,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제조사공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안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향후 변동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안내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 수입식품 상담센터(1811-6496)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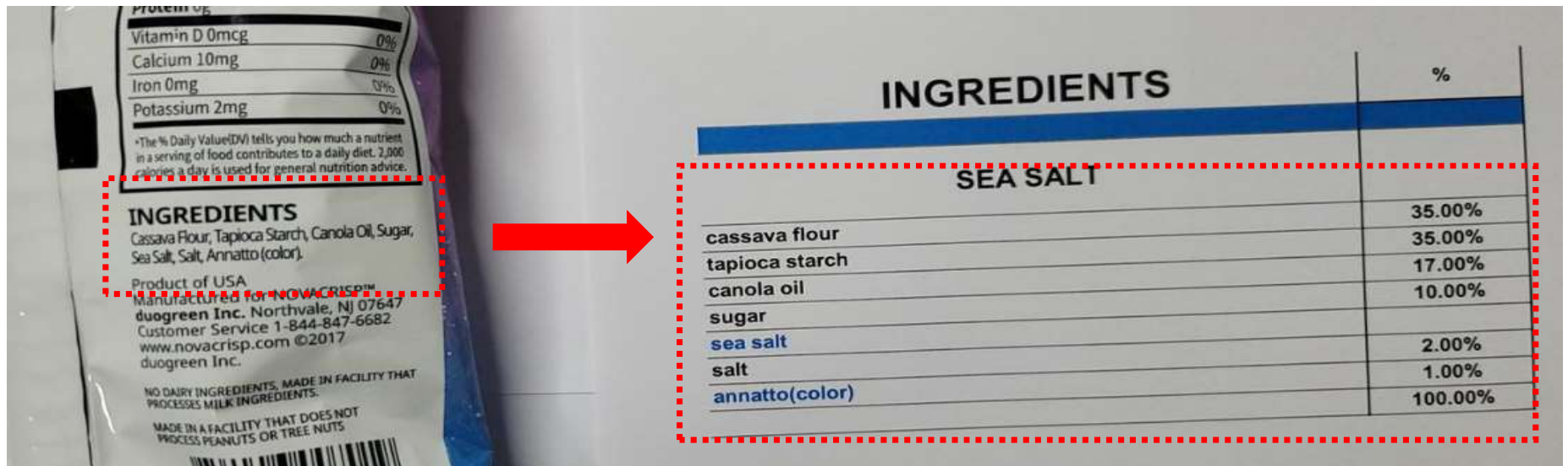
# 성분분석표 + 현품 확인하기

▣ 성분분석표와 현품확인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제조업소까지 등록이 완료 되셨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품목의 인쇄되어 있는 Ingredients[성분분석]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수출국 제조사에서 보내주신 서류를 열심히 검토하여 수입준비를 마무리 하셨는데 서류와 현품인쇄된 성분이 틀려진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준비하셨던 수고가 물거품이 되겠지요.

▣ 성분분석표와

아래 현품성분과 제조사로 부터 전달 받은 Ingredients List 를 비교해 봅니다. [ 잘 일치 하네요. ^^ ]



# 현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확인하기

▣ 현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 제시되는 수입식품을 확인해 보니 전면 상단 우측에 유통기한이 표시 되었네요.

또한 月은 영문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영문 읽는법을 함께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

예 : 유통기한 : 현품전면 상단에 별표표시일까지 (읽는법:일.월.년순)

영문읽는법(예시): JAN(1월),FEB(2월),MAR(3월),APR(4월),MAY(5월),JUN(6월),**JUL(7월)**,  
AUG(8월),SEP(9월),OCT(10월),NOV(11월),DEC(12월)



# 식품표시 광고 및 영양강조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강조사항

동 법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제2조제3호 마목에 따르면,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별지1』1.아.3.나)에 따르면, "덜",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과 비교하여 최소 25%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며,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값이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합니다.

- 당류 "저" 세부기준 : 식품 100g당 5g 미만 또는 식품 100mℓ당 2.5g 미만

# 식품표시 광고 및 영양강조

##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강조사항

Natural 천연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이어야 합니다.

## ▣ 100% 표시

100% 표시는 표시대상 원재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 ▣ 소비자 오인, 혼동 표시금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대상이 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수입, 소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용기, 포장등에 각호의 소비자가 오인, 혼동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오인, 혼동 할 수 있는 표시에 해당되어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 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재의 식품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표시
3.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1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4. **No Preservatives, 100% All Natural, No Trans Fat, No Gluten, No Gluten , Sugar Free, Low Sodium** 등

# 현품 인증표시 확인하기

▣ 수입하시고자 하는 **현품에 표시된 인증표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 하셔야 할 부분 많이 있네요.  
이외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만 정리 했습니다. ^^ ;



# 현품 포장재질 확인하기



Your's Best partner "Bokang"





# 현품 포장재질 확인하기

## 0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2018.12.23.일 이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질·구조개선 이행을 확보 할 수 있는 의무조항과 미 준수 시 제재 조항 부재 등 재질·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미비
- 이에, 재질·구조 개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령(2018.12.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 2019.12.25.일 시행)

### 목적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유도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
  - 분담금 차등화 대상 재질·구조(미정) 중 어느 하나라도 사용할 경우 분담금 단가를 할증
-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
  -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하여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 추진



## 02.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 제39조의2제1호, 제4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48조제3항제1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 제26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 (법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의무 부여(제9조의2)
- (고시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공포(포장재 재활용을 저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선정)
  -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 PVC 계열 재질,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몸체에서 리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리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선정
  - 사용금지대상 중 제품 기능에 장애 발생 등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포장재를 사용금지 예외대상으로 선정

###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결과 표시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제9조의3)
- (시행규칙) ①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자체평가 → ② (환경공단) 확인 → ③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및 제품 목록 제출(제3조의3 및 제3조의4)

# 현품 포장재질 확인하기

- (의무생산자) 환경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전에 포장재의 재질·구조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후 환경공단에 검토 신청
- (환경공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필요시 보완 요구, 시험분석, 현장방문 등 실시)
- (의무생산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결과 표시(필요시 9개월까지 표시 추가 연장신청 가능)
- ※ 다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표시 생략 가능
- (의무생산자) 평가 받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목록 등을 제조·수입·판매한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환경공단에 제출
- (고시②) 포장재 재질별 구성항목(음체, 리벨 등)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설정
  -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 고시)
- (고시③) 표시 도안 및 위치 등 표시 기준 설정,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평가 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한 경우 규정
  -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 사용금지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 (법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을 위반한 의무생산자에게 1년(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개선명령 조치, 개선명령 미이행시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 조치(제9조의4)
- (시행규칙) 사용금지 대상 포장재에 대한 개선명령 및 이행절차, 개선기간 연장 및 중단명령 절차 규정(제3조의5, 제3조의6, 제3조의7)
  - (개선명령) 개선명령서 통보(환경부장관) → 이행계획서 제출(의무생산자, 3개월 이내) → 이행결과 통보(의무생산자, 개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 이행여부 확인(환경부장관)
  - ※ 개선명령 미이행시 환경부장관이 의무생산자에게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조치
  - (개선기간 연장) 개선 기간 연장 신청(생산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검토 결과 통보(환경부장관, 10일 이내)
    - \* 2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 가능
  - (중단명령 절차) 중단명령서 발부(환경부장관) → 제조·수입·판매 중단(의무생산자, 중단기간 종료 또는 중단명령 해제 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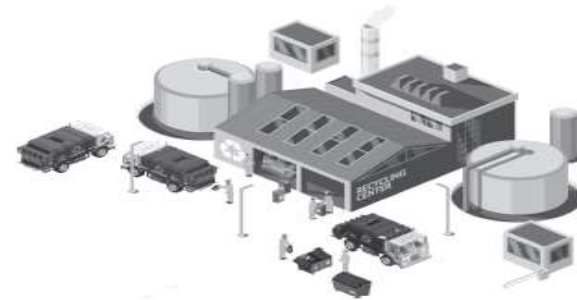
## 제조·수입·판매중단 명령을 같음한 과징금 부과

- (법률)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단명령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제9조의5)
- (시행령)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규정(제7조의2)
  - (산정기준) 중단기간 × 1일당 과징금\*(10억 초과시 10억으로 함)
  - \* 1일당 과징금 = 1일당 출고·수입량 ×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단위비용
  - (부과절차) 부과이유·부과금액 등 서면 통보(환경부장관) → 과징금 납부(의무생산자, 60일 이내)

## 중단명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수단(벌금 또는 과태료) 마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제39조의2제1호)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제4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시행일) 2019.12.25일



# 현품 포장재질 확인하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포장재 등급\*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 의무화(분리배출표시와 병기)

\*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 가. 등급평가 및 표시 대상

### 등급평가 의무 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 법적근거: 제9조의3제2항
- 등급평가는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 모두 받아야 함
- 법 시행 전 제조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 비대상

### 평가 결과 표시 의무 대상

- 등급표시는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최우수, 우수, 보통 등급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다만,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는 미표시 가능
  - PV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은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에 해당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함
- 또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멸균팩 등 제품 기능상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표시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미표시 가능



# 주의사항

▣ 제조사 표시 또는 한글표시사항이 **이중부착**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 표시 중요사항 가리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제품명
- 제조사명
-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성분 및 영양정보 관련내용
- 보관방법등

▣ 수출국 제조사 표시가 없는 무표시 제품은 반려대상 입니다.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읽는법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인쇄가 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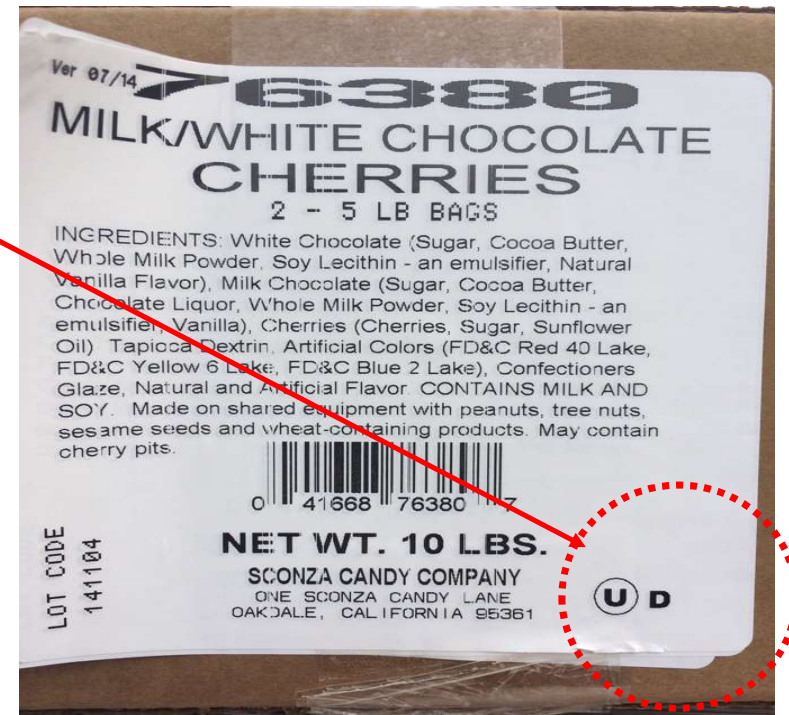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라벨로 부착한 포장은 반려대상 입니다.

▣ 현품에 인쇄된 보관온도 및 보관방법 [실온, 냉장, 냉동] 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초정밀검사를 받았던 제품이 포장지가 리뉴얼 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명, 성분, 제조공정, 제조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정밀검사 다시 받아야 함

▣ 속포장과 겉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관세법인 보강 [補強]

## Thank you !

BOKANG as Your Business Partner

© 2019 BOKANG CUSTOMS & TRADE SERVICE.  
All Rights Reserved.

Your's Best partner "Bokang"

